

국방부령

지 퇴 의 제 거 등 지 퇴 대 응 활 동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월 일	2025.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 2.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탐지·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방법 등과 지뢰 등의 탐지·제거 실시 및 국방부장관이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의 검증에 관한 절차·방법을 정하며, 지뢰 등의 탐지·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 1) 지뢰 등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착수 승인 신청서에 실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착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실행계획은 지뢰 등 탐지·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지뢰 등 탐지·제거의 세부계획, 완료 보고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나. 지뢰 등의 탐지·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토사 등이 유실됨으로 인한 지뢰 등의 폭발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뢰 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뢰 등의 탐지·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방법을 정함.

다. 지뢰 등의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지뢰 등의 탐지·제거는 그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 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 선정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토양·식생 및 지뢰 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뢰 등 제거 완료시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작업일지, 실행계획의 추진 결과 보고서, 지뢰등 제거목록 등을 제출하여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1. 5. ~ 12. 16., 2025. 2. 10.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제거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지뢰제거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 승인서를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및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뢰등의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등의 탐지·제거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그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 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 시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토양·식생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추진 결과 보고서

2. 작업일지

3. 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제거방법 및 그 결과 등을 적은 지뢰등 제거 목록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의 제거 완료 후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뢰제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날(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일시·장소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2. 지뢰등의 탐지·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 매설, 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
3. 지뢰등의 탐지·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 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거나 대행했던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③ 영 제11조제5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행계획의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실행계획은 제2호 세부기준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나.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 탐지·제거의 실행을 위하여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등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세부기준

가. 지뢰등 탐지·제거의 개요

지뢰등 탐지·제거의 목표(지뢰등 탐지·제거의 깊이에 관한 목표를 포함한다),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등 정보, 실행 주체·시기·기간·비용 등 실행개요, 전체 일정표와 일정관리계획, 실행 주체의 업무 수행·관리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현장에서의 시설 배치도

나.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정찰 등을 통해 분석한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등을 말한다],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다. 사고 예방·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지뢰등 탐지·제거 단계별 위험 요소(사고, 질병, 기상을 말한다),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다) 최근 1년 이내의 장비의 점검 주기와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장비의 점검 계획

2)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순서도 등 지뢰등 탐지·제거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지원체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인근의 의료기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과 의료자원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및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체계 등

4)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저감대책, 소방시설의 설치 및 방화대(防火帶)의 편성 계획

5) 환경관리계획

지뢰등 탐지·제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요소와 그 저감대책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계획 등

라. 현장 표준운영절차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법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 법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 및 법 제14조에 따른 완료 보고·검증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최근 1년 이내의 장비의 점검 주기와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향후 장비의 점검 계획,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관리계획

법률, 지뢰대응활동표준, 계약조건, 현장 표준운영절차, 검증기준 등 지뢰 탐지·제거 업무와 절차를 감독하고 통제하여 부적합의 발생원인을 제거하여 품질의 유지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바.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지뢰등 탐지·제거 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경보체제,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2]

사전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및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1) 지뢰제거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1)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2) 폭우 등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토사 및 지뢰등의 유실됨으로 인한 지뢰
등의 폭발 가능성의 증가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 위험수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및 결과를 담은 위험수준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1)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부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도 위험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위험예방교육은 해당 지역에서 지뢰등 탐지·제거를 실시하는 지뢰제거
자가 주관하고, 설명회나 방문교육 또는 홍보물의 게시·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등 탐지·제거의 목적, 대상지역 및 기간

(2) 지뢰등 탐지·제거의 범위 및 절차

(3) 지뢰등의 종류별 형태 및 특징

(4) 안전한 지뢰등 탐지·제거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5) 지뢰등의 발견 또는 지뢰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별 전화번호

다.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

근 차단시설 설치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내 및 그 주변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적정수를 설치해야 하고, 안전지역 및 위험지역으로서로 구분하여 모양·색상·재질을 다르게 하되, 밤에도 글자나 기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1)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 2)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 및 구급차를 배치(구급차를 임차하여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 3) 현장에 구급차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할 것
- 4) 현장에 별표 1 제2호다목1)부터 4)까지의 계획 및 체계도를 비치할 것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탐지·제거 중 응급의료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마.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 1) 임시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임시보관시설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에 울타리나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보관시설과 상황실 및 지뢰등의 탐지·제거 인력의 휴식공간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
 - (3) 벽과 바닥은 지뢰등의 폭발로 발생하는 파편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모래주머니·콘크리트블럭조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 (4) 지붕은 눈·비 또는 바람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강판 또는 아스팔트청글 등으로 마감한 샌드위치 패널(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을 말한다) 등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 (5) 임시보관시설의 출입과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것
- 2)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하는 지뢰등의 종류, 입출 및 잔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시설에 지뢰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1) 화재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가연성 물질은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2)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반경 20미터 이내의 구역에 금연 표지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 (3)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및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등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 2)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에서의 식생(植生) 제거는 수목의 크기·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탐지·제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할 것
 - (2) 분뇨 및 유류의 유출 방지를 위해 이를 저장·보관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갖추어 것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 사.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 1) 지뢰제거자는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 지뢰제거자는 먼지나 티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이나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2.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폭설, 폭우, 안개, 고농도 미세먼지, 폭염 및 한파 등 기상상황에 따른 조치방안과 질병 예방·대응 방안 등 제1호 각 목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외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

1. 국방부장관이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 가. 검증팀 구성
 - 나. 지뢰제거자에게 검증팀 구성 인원의 인적사항 및 현장 방문일시 통보(방문일 1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다. 검증팀의 현장 방문
 - 라. 지뢰등의 제거가 완료된 대상지역 토지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실시
 - 마. 지뢰제거자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결과를 문서로 통보
2. 검증팀은 「작전사령부령」 제7조에 따라 작전사령부에 설치된 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3. 검증은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토지의 총면적을 2천5백제곱미터 단위로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무작위로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 지뢰제거자가 사용한 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장비로 지뢰등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지뢰등 탐지·제거의 목표 깊이까지 탐지해야 한다.
4. 재검증은 제3호에 따른 검증의 실시 과정에서 지뢰등이 발견되는 경우 등 지뢰등 탐지·제거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토지의 총면적을 대상으로 다시 지뢰등을 탐지·제거하게 한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에 따른 검증의 방법을 준용한다.
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허가 등의 확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예정지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비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뢰제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허가 또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요	변경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 내용 ※ 당초 실행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뢰제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변경승인서 발급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칭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승인조건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앞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	방 부

50mm×90mm[백상지 150g/㎡]

(앞쪽)

소	속:	
성	명:	
직	위:	
군	번: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제거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50mm×90mm[백상지 150g/㎡]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9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함 보완기간 및 허가·허가 또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국방부)

➔

심의
처리기관
(국방부)

➔

결정 내용 통지
처리기관
(국방부)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
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직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 한 보완기간 및 허가·허가 또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 습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개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결과 및 이유		
	손실보상금 결정 금액		
	금 원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내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국방부)

➔

심의
처리기관
(국방부)

➔

결정 내용 통지
처리기관
(국방부)